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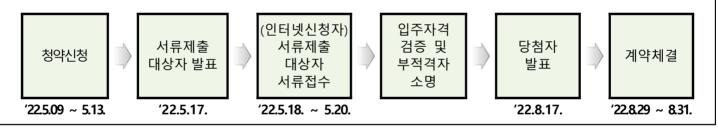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 접수는 '22.5.9(월) 10:00 ~ 5.13(금) 18:00 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u>2022.04.29(금)</u>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1957.04.29 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4.신청자격 확인)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진시당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고창율계 고령자복지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1600-1004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율계리 118번지 일원 영구임대 12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세대별	계약면적(m²)					
공급 형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월
				기타공용					
26A	56	26.86	16.6678	12.7550	56.2828	56	101	철근콘크리트 벽식/	(22.11
36A	72	36.49	22.6437	17.3280	76.4617	72	101	덕석/ 개별난방	′23.11

-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고창율계(고령자복지) 주택은 26형 56호, 36형 7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 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공급형	적용	임대보증금				I	한가능보증금		
	구분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월임대료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군	2,409,000	121,000	2,288,000	47,910	(+)	3,000,000	5,409,000	32,910
26A	<u> </u>	2,409,000	121,000	0 2,200,000 47,910	(-)	1,000,000	1,409,000	49,990	
20A	「나」군	9,534,000	477,000	0.057.000 100.130 (-	(+)	12,000,000	21,534,000	40,130	
	니그正	9,334,000	477,000	9,037,000	9,057,000 100,130		6,000,000	3,534,000	112,630
	「가」군	3,273,000	164,000	3,109,000	65 000	(+)	7,000,000	10,273,000	30,090
36A	. \\	3,213,000	104,000	3,109,000	65,090		1,000,000	2,273,000	67,170
JUA	「나」군	12,922,000	647,000	12,225,000	25,000 135,710		16,000,000	28,922,000	55,710
	<u>-</u>	12,322,000	047,000	12,223,000	133,710	(-)	9,000,000	3,922,000	154,46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26A 형 및 3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및 **차목**(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이바고그	인터넷 · 모바일	'22.05.09.(월) 10:00 ~ '22.05.13(금) 18:00	'22.05.17(화) 17:00 이후	(서류제출기간) '22.05.18(수)~ '22.05.20(금)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주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22.08.17 (수)	(전자계약) ' 22.08.29(월) 10:00~ ' 22.08.31(수) 16:00
일반공급	현장	'22.05.12(목) 10:30 ~ 15:30 (12시-13시 제외) * 현장신청 시 필요서류 지참 방문	17:00 이후	6층 주거복지사업1부 고창황산 국민임대 담당자 * 등기우편은 '22.5.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7:00 이후	(현장계약) ' 22.08.31(수) 10:30~15:30 (12시-13시 제외)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 (PC) LH청약센터→상단『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u>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내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시청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만 65세 이상(1957.04.29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u>공급신청자격</u>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u>단</u>,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 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1	A E BI TILLO 317	-				
구분	1 시브병 이즈人드 기즈/고	<mark>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mark> 고즈태 트병법 시해그치 병교2 \	<u> </u>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2. 설명한 고국	0.5.5	0,5,5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1원 이하				
소득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1 1 1	선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 (24,200)만원 이하							
		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mark>3,557</mark>)만원 0 L 병도로 추기 기기 되	하				
	│ * 자동차 는 총 자산 평가오	[길노노 구기 판디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7	분	산정방법
<u></u>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기액 총자산기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기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u>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 선정<u>방법</u>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아래 배점표 참고)	\Rightarrow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Rightarrow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3등급	4	공고일 현재 기준	
① 장기요양등급	4등급	3		
① 9\JT00B	5등급	2	제7조제1항 3호~6호	
	인지지원등급	1	세/포세18 3포~0포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공고일 현재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만75세 이상	3		
③ 신청자 연령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2	공고일 현재 기준	
	만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5년 이상	3		
건설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 전북 고창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mark>공동</mark>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mark>공동</mark>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mark>공동</mark>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mark>공동</mark>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mark>공동</mark>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0.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 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3.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 현장 신청일정: '22.05.12(목) 10:30 ~ 15:3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현장접수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고창군)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기다 대기이어 대기 시청하 때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현장접수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4.29)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고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기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世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u>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 ■
	(상세)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FII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대	건경시역 등당시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7L4 E
상 	기디 내고	< 해당자만 제출 >	· 각1통
자	기타서류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 자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2.8.17(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u> 단, 입주 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2022.08.29(월) 10:00 ~ 2022.08.3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Rightarrow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rightarrow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부동산 전	나일 계약체결】 건자계약"앱 다운로드 E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	_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 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 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현장 계약 [기간 : 2022.08.31(수) 10:30 ~ 15:30 (중식시간 12:00 ~ 13:00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mark>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mark>
-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현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독단계66시, 답중테니던의 단요66시, 단요포6, 신분증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一十七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임대	_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및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조건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
신청	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u>
자격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
	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가격보유어구 확인당입 및 인정기분은 구역당입에 인한 유역 제52보, 33보 에 따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_ ····································
입주자선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정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
	을 해지해야 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
	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서류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단지특성	• 단지 남측 직선 약 300m거리 지구 외에 소수의 분묘가 있으며, 인근 목련로에 송전철탑(송전선로)가

구분 유의사항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목련로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왕복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추후 확장예정(왕복6차선)이며,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동남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는 대체시설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설치예정으로 향후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바닥결로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 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 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사랑방, 무인택배, 공용세탁실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섀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 (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7~11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34대입니다. (아파트26대, 사회복지관 8대)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1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 (전기,수도)입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구분 유의사항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으며,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벽걸이에어컨이 제공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주방보조등)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6Am², 36Am² 타입에 설치)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횡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418-82-06818)	이수건설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 사용자
712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T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휠체어 사용자
ᆿᆯ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실	지시 나이지서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1개소에	좌식 샤워시설	(L자형 1개, —자형 1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한함)	좌변기	지버기 버먼에 아저스자이/지청〉서킨	지체.뇌병변장애인,
,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TÖ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 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 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상업소독 원조업(新統策). 과수 원예임. 양점임. 종만요. 독수작품 상업도 가수의 사용일. 중국업 또는 부회임 등과 이에 무해된 상업도 가수의 사용일. 중국업 또는 부회임 등과 이에 무해한 상업소독-국제성 중업소독-공업제공 기계 기계 기타시업소독 영업기업 등에 가수의 시원 등에 가는 기타시업소독 어디교 에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독 기타시업소독 도메인 소메인 제조업. 기타 시업에서 얻는 소독 구세정 중업소독(사업소독) 기타시업소독 도메인 소메인 제조업. 기타 시업에서 얻는 소독 구세정 중압소독(사업소독) 시업지등록은 이대소독 부동산 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독 구세정 중압소독(재산소독) 시업지등록은 이라는 소독 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독 구세정 중압소독(재산소독) 시업지등록은 연구소독 반조는 전원 이자소북 이라구 시업지등록은 구세정 중압소독(재산소독) 인구소독 인구소독 반조는 본 등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독 구시정 중압소독(재산소독) 인구선 연급보험. 연근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학 구시업급급이 사하돼직업급급이 무원되지당인 등에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리 등관되었다면 사하돼직업급급이 구원되었다면 가는 소독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리 등관되었다면 사하돼직업급급이 무원되지당인 등에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리 연구보험 인공전체 보존대상자원이를 등에 기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도지와 그 대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성의 투자 건물(건축법 제고관제)원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을 가 보존대상자원이를 등에 가장 보존대상자원이를 등에 가장 기관을 지하는 병이 있는 것과 이에 말한 시설을 가지 하고 등 전을 이 기반 등 절차 이에 말한 경상 기가 가장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가시실, 지점시 기가 또는 있는 지원 교회에 가장 보는 지원에서 구택은 제일이 기간 독원을 구신받 및 그 부속 토시물 말하다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가스를 지원보 및 고리실을 전원 및 고리실을 전원 시로 도자에게 소조교급 승용자동차, 승학자 그 자방생정 시기표준에 구로 가장 가능적으로 보건하는 대통 기상 등록 무적하는 지급으로 등이 전체로 등록 가적절보 기관 기관 소문원자에게 예탁한 단육금 등이 지방세정 자료 함께 가는 공학원과 의원원 지원 기관 등록 전성적 자료 함께 가는 목적 기관				
소득 임임소득 양담입도성품성(20 보는 19년 2년 2년 1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수하는 업무에서 일는 소득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기타사임소득 모매입소매일, 제조임, 기타 사임에서 일는 소득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 구세정 중인소득(사임소득) - 구세정 중인소득(재산소득) 연기소득 행하는 소득 연기소득 인간 연구보험, 연금자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구소득 인간 연구보험, 연금자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류원되지만급급에, 구방위되지만급급에 기타급등(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제산으로 산정) -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독 인기타급등(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제산으로 산정) - 구원인급급여, 시하되지안급급여, 경우원되지만급급여, 경우원인원 및 집 기타급등(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제산으로 산정) - 고용정보원 일입급여 근본하는 경우 기타급등(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제산으로 산정) - 구원인급급여, 시하되지안급급여, 경우원인원 및 집 및는 사실상의 토지 그 경우인료급여, 성우체구인급, 한국 기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속법 제2조제) 함치되었고, : 토지에 정착하는 공원 지분교기가를 등 또는 백이 있는 것과 이에 열리 시설을, 지하나 고가의 공작들에설지하는 사무소·경연 경·점포·지·강조·조 등 경우 지분과 기종 또는 백이 있는 것과 이에 열리 시설을, 지하나 고가의 공작들에설지하는 사무소·경연 경·점포·지·강조·조 등 기원에서 자장시설 , 크리사실 집안시설, 프레사실, 레너지서설, 저장시설, 도리사실 집안시설, 프레사실, 레너지서설, 저장시설, 도리사실 집안시설, 프레사실, 레너지서설, 저장시설, 도리사실 집안시설, 프레사실, 레너지서설, 제상 등록 기원을 보고 보고 보고 된 건축을이 일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설문 기원 열대에 의한 유사한 시설(이에 열리 시설을 모하면) - 주택이반 세대의 구성일이 경기간 등록하고 구분(도 지의 건축을이 일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지구준액 국도부 지적정보 - 작보수의 기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급, 일세보증급, 일세보증급, 상가보증급 등) - 지방세정 자료 선박학정기 상대상을 되기 보여 이와 유사한 비행기 - 시방세정 자료 인목에서 자료 기상에 있다는 비행기 - 시방세정 자료 인목에서 가료 기의 가능가 나를 하면 가를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농업소득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성 중립소득(자립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중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인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중합소득(재산소득) 에급 주식, 제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급소득 민간 연급보험, 연급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 급용정보 조회결과 구민연급급여, 사회되직연급급여,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보험주체국연급, 한국 지역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성의 토지 그렇는 자라고 등 지하나 그가의 공식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 상 지원 - 자고 자고 등 사실물(지방세법 제조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는 관 작물 중 지능과 가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사실을, 지하나 고가의 공식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 상 기본 등로 가장 전후을 기본 사업에 이어 유사한 사실(이에 빨리 사실 등로 지원 그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실(이에 빨리 사업을 포함한다) 구핵되는 자리선 등 대체구시설 이너지 공급되는 기상에 점 자료 보험에 이와 유사한 사실(이에 빨리 사업을 포함한다) 구핵되는 기상을 함께 가장 건축을 기원에서 주택은 제외) 보험 기관 건축물의 현위에서 주택은 제외 보험 기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보험 기관 가역 등 제 기관 구석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보험 기관 기관 등록 기본 자리전 기관 등 및 기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보험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보험 기관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대답소백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기타지답소백 : 사업자등록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기타 장하는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구민연금급여, 사학되직연금급여, 구방부되지연금급여, 소득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 어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항)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구민연금급여, 사학되직연금급여, 국방부되지 연금급여, 발정자체국연급, 한국 교통자분인 산재보험급여 교통자보운대상자보상급여 등 기타급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항) - 교통자분인 산제보험급여 교통자보운대상자보상급여 등 기타급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항) - 로루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교통자보운대상자보상급여 등 기타급품(의 기타급류(의 기타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의 기타급급급급급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이자소독 에금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 - 국세청 중합소독(재산소독) 연금소독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독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독 가장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공원회의 구상 전 변경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공원회의 실업급여 구조목원회의적(급급여, 국학부회의 설업급여 고로복기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지역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함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을 중 지원과 가장 또는 백이 있는 것과 이에 발린 시설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실치하는 사무소·공연 가능 전공 중 지원과 기장 또는 백이 있는 것과 이에 발린 시설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실치하는 사무소·공연 가능 전공 중 지원과 기장 모든 해 이었는 건식 급 해 되었다. 구독에 신청 포함한다) - 구택이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 및 고속 토지를 만하며, 단목주택과 공동주템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자료자를 받하며, 단목주택과 공동주템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자료자를 가고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건택으로 사용하는 대적 기관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건택의 가라 전체 자료 행건을 가는 사용이 답은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가 비행건가 함전의한공기 회전의한공기 고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가 함전시장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株木), 죽목 등 입목(소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호독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공적이전 소득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공적이전 수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금 연금 대 법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에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을 중 지붕과 기동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 기속 토지션 및 구태 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도자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축구자동차, 이륜자동차 : 구로부 차적자전 기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자전 (선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전박·항공기 선박·당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탈린 시설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 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제장시설, 도크시설 전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 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 등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건축물 및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보여의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변경 전박·항공기 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국도무 왁싱일사 싱모
		 선박·항공기	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 지방세정 자료

			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 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송	(총자산 산정 시 :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합.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리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2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